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6.

발 의 자 : 임의자 · 이인선 · 권영진
박성훈 · 김 건 · 조지연
강승규 · 박덕흠 · 이소희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내우외환, 천재지변, 긴급한 재정상·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,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,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할 경우,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, 금융비용 및 미수금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,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

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,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2조의2, 제9조의2 및 제18조 등).

주요내용

- 가. 최고가격의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,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).
- 나.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, 최고가격 지정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 등의 운영 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항 및 제6항).
- 다.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경우 금융부담과 미수금 등 재정부담의 미래세대 전가 정도를 객관적·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4조의2).
- 라.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(안 제9조의2).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정할”을 “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또는 제3항”을 “제1항, 제2항 및 제4항”으로, “지정하거나”를 “지정·연장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최고가격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최고가격 지정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제2항 중 “요금”을 “요금(이하 이 조에서 “가격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실제로 거래한 가격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의

정도,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공요금 동결 등에 따른 세대간 재정부담 전가 평가 등) ①

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결 또는 유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, 미수금 등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정도를 객관적·계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유예가 국민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2(이행강제금)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

중지명령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, 이행 지연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례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.

③ 이행강제금의 부과, 징수 및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 중 “지정과”를 “지정·연기 및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처분”을 “처분(제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제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)”으로, “이의신청”을 “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이의신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최고가가격의 지정 등) ① 정부는 내우외환, 천재지변, 긴급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,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(이하 “최고가가격”이라 한다)을 <u>지정할</u> 수 있다.	제2조(최고가가격의 지정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-----.
<신 설>	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최고가가격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· ③ (생략)	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가격을 <u>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</u>	⑤ -----제1항, 제2항 및 제4항----- <u>지정·연장하거나</u> -----.

<신 설>

제2조의2(과징금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·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

⑥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최고가격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최고가격 지정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과징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요금(이하 이 조에서 “가격등”이라 한다)----- . 다만, 실제로 거래한 가격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의 정도,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의2(공공요금 동결 등에 따른 세대간 재정부담 전가 평가 등) ①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결 또는 유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, 미수금 등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정도를 객관적·계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유예가 국민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보고서의 제출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의2(이행강제금) ① 주무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

제13조(의견청취 등)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,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하는 경우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이의신청 특례)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

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, 이행 지연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례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.

③ 이행강제금의 부과, 징수 및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 등) -----
-----지정·연기 및-----

-----.

제18조(이의신청 특례) ① -----
-----처분(제2조의2에 따른
과징금 부과 및 제9조의2에
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

수 있다.	<u>포함한다)</u> -----
	----- <u>처분을 통지받</u>
	<u>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</u>
	<u>서 이의신청</u>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